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9. 4. 15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점용자에 대하여 입점 또는 점열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권위적인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점용자가 의무위반시 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 제9조 점용자의 준수사항 및 제10조 허가취소의 규정이 되어 있어 점용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함 (안 제11조)

3. 관계법령

해당사항 없음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제11조(감독)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</u></p> <p><u>하여금 점용자에 대하여 입검 또는</u></p> <p><u>검열을 행하게 할 수 있다</u></p>	<p>(삭제)</p>